

『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2월 25일

나. 발 의 자 : 윤종호, 강승수, 김근아, 김복자, 김상조
김태근, 손홍섭, 안장환, 정하영, 허 복
(10명)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3월 4일

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윤종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규교육의 틀 밖에 놓여 있어 공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절실하나 거의 지원이 없는 상황임에 따라,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은 이들이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.
- 이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,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, 제3조)
-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·시행을 규정함(안 제6조)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
-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사항 명시(안 제8조)
- 후견인 제도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, 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청소년 기본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'14.5.28 공포, '15.5.29 시행)됨에 따라, 상위법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'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'를 두고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'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'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, 경찰서, 사회단체,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미시에서도 28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며, 이들 대부분 사회적 편견과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,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.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